

대법원 2019도340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텔레마케팅으로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유치영업을 하는 피고인들이 개인정보 판매상들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거나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등에 기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인들의 지위

- 피고인들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의 가입만기가 임박한 고객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텔레마케팅 등으로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유치영업을 하는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임

나. 공소사실의 요지¹⁾

- 피고인들이 공소 외 개인정보판매상들 및 공동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부분

1) 피고인 1, 2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와 제공한 행위로 모두 기소되고, 피고인 3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만 기소됨

- [주위적 공소사실]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 있지 않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 [제1 예비적 공소사실, 원심에서 추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 [제2 예비적 공소사실]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 **핵심 쟁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제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법조]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59조 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피고인 1, 2가 개인정보를 제공한 부분

- 수집한 목적 범위에 있지 않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함(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2. 소송경과

가. 제1심

▣ 유·무죄 판단

-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부분
 - 주위적 공소사실 이유무죄, 제2 예비적 공소사실 유죄
- 피고인 1, 2가 개인정보를 제공한 부분
 - 무죄

▣ 양형

- 피고인 1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 피고인 2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 피고인 3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나. 원심

▣ 유·무죄 판단

-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부분
 - [개인정보판매상들로부터 제공받은 부분] **모두 무죄**
 - 주위적 공소사실 ⇒ 범죄가 성립하려면 개인정보판매상들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었거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이를 다시 피고인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제1 예비적 공소사실 ⇒ 범죄가 성립하려면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것으로서 그가 누설한 개인정보’ 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제2 예비적 공소사실 ⇒ 행위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로 처벌할 수 없는데, 피고인들이 정보주체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유죄**

- 피고인 1, 2가 개인정보를 제공한 부분

- **유죄**

- ▣ 양형

- 제1심과 동일

다. 상고인 ➡ 검사

- 원심 유죄 부분은 상고이유 기재 ×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등에 기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매수한 행위를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제2 예비적 공소사실 관련)
- ▣ 피고인들이 개인정보판매상들로부터 제공받은 부분에 대하여 주위적, 제1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 상고를 모두 기각

다. 판단 내용

- ▣ 피고인들이 개인정보판매상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부분에 대한 주위적, 제1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 원심의 무죄 판단을 수긍함

- ▣ 피고인들이 개인정보판매상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부분에 대한 제2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 법리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그 중 개인정보 취득 과정에서 사용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는 정보주체나 개인정보 보유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는 물론 해킹과 같이 정보주체 등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됨

①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가 전단과 후단에서 ‘취득한 자’와 ‘제공받은 자’를 구별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등에 기하지 아니한 채 유통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만으로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다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후단에 해당될 수 있음

- 구체적 판단

- 원심이, 피고인들이 정보주체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임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의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음
- ① 피고인들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그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판매상들로부터 유상으로 매입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판매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가나 해킹 등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피고인들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② 피고인들이 매입한 개인정보가 그 전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이거나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인 사정을 알았다고도 보기 어려움 ▶ 피고인들에 대하여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후단이 적용될 수 없음

4. 판결의 의의

- ▣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의 의미,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후단에서 정한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미를 실시함